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 . (제 회)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통무예진흥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통무예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89호,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전통무예 교육 및 각종 대회 지원 등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문오류 및 특별자치시장 포함으로 개정함(제2조의제1항제2항 개정)

1) 조문오류(제2조제1항)

－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특별자치시장(제2조제2항)

나.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대상을 구체화 하여 내용을 명시함(제3조 신설)

다. 법률인용조항 이동사항 반영한 수정(제4조제1항)

라. 전통무예의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5조신설)

마.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신설(제6조)

바. 위탁에 따른 전담기관을 근거를 명시함(제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치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통무예진흥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제1항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제3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지도자 및 수련생 현황

2. 전통무예 대회 개최 및 운영 실태

3.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통무예 또는 통계 조사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현행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제4조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이동<기존에는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함>

제5조, 제6조,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교육 지원 등)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무예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2. 전통무예 계승·발전에 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전통무예 관련 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지원 사업
4. 전통무예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전통무예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2.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통무예 진흥 관련 사업 수행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관련 행정지원
 2.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관련 조사·연구의 실시
 3. 그 밖에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제2조(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①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제3조제2항제8호-----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 -----.
<u><신 설></u>	<u>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u>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지도자 및 수련생 <u>현황</u>
	2. 전통무예 대회 개최 및 운영

<u><신 설></u>	<u>다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u> <u>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u> <u>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통무예 진흥 관련 사업 수행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u> <u>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u>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관련 행정지원</u> <u>2.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관</u>

	<u>련 조사·연구의 실시</u> <u>3. 그 밖에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u> <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	
연 락 처	(044) 203 - 3147